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and Behavior in Relation to Child Abuse*

김수정(Soo Jung Kim)¹⁾

이재연(Jae Yeon Lee)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reporting intention and behavior in relation to child abuse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Scale, which includes demographics, preparation level of training, school characteristics, reporting-related behavior, reporting intention, knowledge,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self-efficacy,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A total of 292 teachers provided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the teachers had suspected the child abuse, 16.3% of them reported, whilst 83.7% of them did not. In terms of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the vignettes of very serious cases were higher than the vignettes of less serious cases. The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of sexual abuse was the highest among the types of child abuse, and it was followed by physical abuse, neglect and emotional abuse. Second, knowledge,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self-efficacy, all of these variables had positive impacts on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Meanwhile, self-efficacy, reporting intention, and the support level of specialists also had positive impacts on reporting behavior. Additionally, women or postgraduate teachers had a higher possibility

* 이 논문은 2012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 Jung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yochangwon-Gil 52,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E-mail : fr0908@yahoo.co.kr

to make a report than men or undergraduate teach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creasing self-efficacy through education and more thorough training about identifying and reporting on child abuse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for detecting abused children at an early stage.

Key Words : 신고 행동(Reporting behaviour), 신고 의도(Reporting intention),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s),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자기효능감(Self-efficacy).

I. 서 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아동이 우리 사회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는 한 개인과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상담전화로 통해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 8,325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058건으로 나타났다(MHW & NCP, 2012).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은 만 7세~12세 2,552건(42.1%)으로 학령기 아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6세 미만 1,441건(23.8%), 만 13세~15세 1,317건(21.7%), 만 16세~17세 475건(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와의 연계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사망, 신체적·인지적 손상, 정서적 고통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동학대예방단체인 Prevent Child Abuse America는 2007년도에 하루 2억 8,400만 달러씩 미국의 아동학대 비용으로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다(Wang & Holton, 2007). 즉, 치료, 격리보호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하루 9,100만 달러였고, 아동학대의 장기적인 경제적 비용을 나타내는 간접비용은 하루 1억 9,4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피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신고의무제도는 법적으로 아동과 주로 함께 하는 전문가들이 학대가 의심될 때 아동보호서비스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Kempe의 ‘구타당한 아동 증후군’에 관한 임상 보고를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Carpenter, 2008).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Daro, 2008).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법적으로 교사를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Kim & Lee, 2011). 이는 아동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가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Greytak, 2009). 특히, 아동들은 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친부모이기에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교사들이 매일의 상호작용을 통해 피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개입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신고의무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사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교사의 신고율은 전체 중에서 2008년 12.3%, 2009년 7.4%, 2010년 7.2%, 2011년 7.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MHW & NCP, 2012). 또한, 미국의 교사 신고율도 2008년 16.7%, 2009년 16.5%, 2010년 16.4%로 조사되었다(USDHHS, 2010).

이는 교사의 개인적 요인, 아동학대에 관련된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잘못된 태도 그리고 신고에 대한 동료 교사의 지지나 자신감 부족이 교사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1; Costello, 2009; Hawkins & McCallum, 2001; Hinson & Fossey, 2000; Kenny, 2001; Kim & Yoon, 2003; Waldeker, 2009). 그리고 교사의 성별, 교사 경력,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최종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 아동학대 관련 교육, 그리고 학교 유형, 학교 크기, 학교 위치,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회의 빈도, 신고 절차 게시 등의

학교 특성 등도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ung, 2009; Huh, 2003; O'Toole, Webster, O'Toole, & Lucal, 1999; Walsh, Schweitzer, & Bridgestock, 2005).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요인마다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신고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 실제 신고 행동을 분석하는 대신 가상의 아동학대 사례를 제시하여 신고 의도를 묻고,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최근 미국, 호주, 대만에서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Goebbels, Nicholson, Walsh and De Vries(2008)는 통합변화모델(Integrated Change Model)을 사용하여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통합변화모델은 정보요인, 인식요인, 동기요인, 능력요인 등을 포함한 모델로서 연구 결과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인식에 관한 기술, 신고 의도, 교사 경력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ytak(2009)도 외부요인,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등을 포함한 통합행동모델(Integrated Model of Behavior)을 사용하여 교사의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교사의 신고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 유형 및 크기, 정보 노출 수준, 신고 절차 게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모델들은 교사의 신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조를 제공하지만, 매우 복잡하거나, 교사의 신고 행동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한편,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제안된 이후 현재까지 타당성과 유용성이 입증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Kim, 2012; Park, 2007). 이 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실제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를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의도는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말라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서의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사용된 지각된 행동 통제는 Ajzen(1991)이 밝히고 있듯이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그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행동이론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므로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행동이론은 최근 간호사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Feng, 2003; Feng, Feng, Huang, & Wang, 2010; Feng & Levine, 2005; Kim & Park, 2005; Natan, Faour, Naamhah, Grinberg, & Klein-Kremer, 2012). 예를 들어, Feng(2003)은 계획행동이론의 모형을 수정하여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대만 간호사 1,362명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아동학대 관련 지식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사례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atan *et al.*(2012)도 계획행동이론을 수정하여 아동학대 관련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이스라엘의 의사와 간호사 250명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태도만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그 의대상이나 국가에 따라 신고 의도나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고, 계획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측정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Kim, 2012).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도나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실제 신고 행동이 아닌 신고 의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존 선행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각된 행동통제의 경우,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의 경우, 지각된 행동통제보다 행동을 더욱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08; Lee, Dunne, Chou, & Fraser, 2012; Povey, Conner, Sparks, James, & Shepherd, 2000; Terry & O'Leary, 1995). 또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신고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난 인구학적 특성, 교육적 준비 수준, 학교 특성 등을 통제 변수로 포함시켜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하고, 신고 의도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령기 아동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 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 아동학대 관련 교육, 학교 특성 등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는 신고의무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행동과 신고 의도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사의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아동 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의 11개 자치구와 경기도 9개시의 총 42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92명이었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거나 교육복지 우선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학교마다 교무부장이나 교감 그리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총 300개 학교 중에서 42개의 초등학교에서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학교 중에서는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1순위, 학대를 의심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를 2순위, 교육 경력 1년 이상인 교사를 3순위로 하여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마다 연구대상자는 1명~20명으로 제한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대상자가 1명이었던 학교의 경우는 신고자가 법적으로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워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학교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를 도와주었거나, 신고했던 교사를 알 경우, 연구 협조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적 준비수준, 학교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먼저,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 교사가 14.8%(43명)이고 여자 교사가 85.2%(248명)로 여자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의 범위는 23세-60세로 평균연령이 40.33세이었고 30대 군이 39.3%(107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8.4%(229명), 자녀 유무는 없는 경우가 75.3%(220명)로 대부분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66.8% (195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교사 경력의 범위는 1년~41년으로 교사의 평균 경력이 15.8년이었고 11년~20년이 39.5%(11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에 관한 교육적 준비수준으로 신고에 관한 정보출처는 다중응답 분석결과, 서면(유인물, 정책) 30.6%(154명), TV 24.2%(12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eparation level of training, schoo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Variables		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248(85.2)	Parent status	Yes	220(75.3)
	Male	43(14.8)		No	72(24.7)
Age	20-30 year	42(15.4)	Education	2-3year degree	13(4.5)
	31-40 year	107(39.3)		4 year degree	195(66.8)
	41-50 year	83(30.5)		Master degree or higher	84(28.8)
	51-59 year or more	40(14.7)			
Marital status	Yes	229(78.4)	Teaching experience	1-10year	89(30.6)
	No	62(21.2)		10-20year	115(39.5)
	Other	1(0.3)		21year or more	87(29.9)
Preparation level of training					
Reporting information Source	in writing	154(30.6)	Provider of information	Inservice teacher education	93(59.2)
	TV	122(24.2)		Child protection agency training	36(22.9)
	On the internet	113(22.4)		On my own	17(10.8)
	in-person training	71(14.1)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11(7.0)
	On line course	39(7.7)			
	None	5(1.0)			
Child abuse training	Yes	121(41.9)	Preparation level of reporting	High	54(47.4)
	No	168(58.1)		midium	33(28.9)
Total training hours	4time or less	92(78.0)		Low	27(23.7)
	5time-6time	15(12.7)			
	7time or more	11(9.3)			
School characteristics					
Location	Suburban	218(74.7)	Reporting procedcure	Yes	80(27.7)
	Urban	74(25.3)		No	88(30.4)
Type	Public	284(97.3)		Not sure	121(41.9)
	Corporate	8(2.7)	Support level of specialist	High	87(29.8)
Size	More than 1000	119(40.8)		Midium	80(27.4)
	501-1000	131(44.9)		Low	125(42.8)
	201-500	30(10.3)	Discussion on child abuse	High	177(60.6)
	200 or less	12(4.1)		Midium	74(25.3)
			Low	41(14.0)	

명), 인터넷 22.4%(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는 예가 41.9%(121명), 아니오가 58.1%(168명)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 시간은 4시간 이하가

78%(92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교육 유형은 다중응답 분석결과, 학교의 교사 연수가 59.2%(9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고에 대한 준비도 수준의 범위는 1

점~5점으로 평균이 3.25이었고, 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47.4%(54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가 근무하는 학교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 위치는 도시가 25.3%(74명), 도시 근교가 74.7%(218명)로 도시 근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학교 유형은 국공립이 97.3%(284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총 학생 수는 501명~1000명 군이 44.9%(131명)로 가장 많았다. 신고 절차 인식 여부는 모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9%(121명)로 가장 많았고, 예는 27.7%(80명), 아니오는 30.4%(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사 등의 지원스텝의 지원 수준의 범위는 1점~5점으로 평균이 2.81점($SD = 1.11$)이었고, 하라고 응답한 군이 42.8%(125명)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한 교사회의 빈도도 1점~5점으로 평균이 3.60점($SD = 0.95$)이었고, 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60.6%(177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행동과 신고 의도를 종속변수로 아동학대와 신고에 관한 지식, 신고에 관한 태도,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 교육적 준비 수준, 학교 특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1) 신고 관련 행동

아동학대 신고 행동은 과거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측정은 ‘아동학대 신고 행동 여부’(1문항)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응답 방식은 ‘예(=1)’와 ‘아니오(=0)’로 구성되었다. 한편, Greytak(2009)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아동학

대 유형별 의심 경험’, ‘아동학대 유형별 신고 행동’, ‘아동학대를 의심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 신고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도 함께 질문하여 기술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도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신고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신고 의도의 측정은 Feng(2003)이 개발하고 Fraser *et al.*(2010)이 사용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심각한 사례 4개와 경미한 사례 4개를 제시한 후 ‘선생님은 이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것인가요?’라고 질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7점 Likert 양식(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신고 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3) 아동학대와 신고에 관한 지식

(1) 아동학대 사례 지식

‘아동학대 사례 지식’의 측정은 앞서 제시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8개를 제시한 후 ‘선생님은 이 사례의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7점 Likert 양식(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2) 아동학대 관련 지식

‘아동학대 관련 지식’의 측정은 Feng(2003)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법, 신고 절차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항들은 각 문항에 정답을 표시한 경우 1점, 오답이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경우 0점을 부여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관련 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4) 신고에 관한 태도

신고에 관한 태도는 신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교사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나는 신고를 함으로써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렵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지 의문이다’, ‘나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것은 교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지고, Fraser *et al.*(2010)의 문항이 본 연구에 맞게 사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양식(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들이 신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5)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교사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동료 교사, 부장이나 교감, 교장 등이 신고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동료 교사, 부장이나 교감, 교장 각각의 신고에 관한 ‘기대(3문항)’, ‘지지(3문항)’, ‘모델링(3문항)’을 묻는 것으로 3개의 하위 요인과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인 문항의 내용으로는 ‘동료 교사들(부장이나 교감, 교장)은 내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료 교사들은 내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나의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동료 교사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언제나 신고할 것이다’ 등으로서 Greytak(2009)의 문항이 본 연구에 맞게 사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양식(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들이 신고에 대해 동료, 부장이나 교감 그리고 교장 등의 사회적 압력을 많이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6)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유형별 의심 사례를 인식하는 것과 신고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에 대한 자신감’(4문항), ‘아동학대 유형별 신고에 대한 자신감’(4문항)을 묻는 것으로 2개의 하위요인과 총 8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는 신체학대(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가 의심되는 사례의 증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나는 신체학대(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가 의심 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등으로서 이 문항들은 Greytak(2009)의 문항이 본 연구에 맞게 사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양식(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학대를 인식하는 것이나 신고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7)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측정은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최종학력', '교사 경력'을 묻는 것으로 총 6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문항들은 Goebbels 등(2008)과 Greytak(2009)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성별은 '남(=0)', '여(=1)'로, 자녀 유무는 '예(=1)', '아니오(=0)'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결혼 여부는 '미혼', '기혼', '기타'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혼/기타(=0)'와 '기혼(=1)'으로 더미변수화(Dummy variable)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2년-3년제 졸', '4년제 대졸', '석사학위 이상', '기타'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4년제 대졸 이하(=0)'와 '대학원 졸업 이상(=1)'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연령이나 경력은 주관식 문항으로 양적변수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8) 교육적 준비 수준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적 준비 수준의 측정은 '신고관련 정보 경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시간',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유형', '신고에 대한 준비도'를 묻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Goebbels *et al.*(2008)과 Greytak(2009)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기술통계를 제외한 분석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만을 살펴보았는데 교육 유무는 '예(=1)', '아니오(=0)'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9) 학교 특성

학교 특성의 측정은 '학교 위치', '학교 유형', '총 학생수', '신고절차 인식 여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지원 인력의 지원수준', '아동학대 관련 교사의 빈

도'를 묻는 것으로 총 6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항들은 Goebbels *et al.*(2008), Greytak(2009), Webster *et al.*(2005)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한편, 기술통계를 제외한 분석단계에서는 신고절차 인식 여부, 지원인력 지원수준, 교사회의 빈도만을 살펴보았는데, 신고 절차 인식여부는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기준변수로 하여 '아니오(=1)'/ '예, 잘 모르겠다(=0)'와 '잘 모르겠다(=1)'/ '예, 아니오(=0)'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그리고 지원인력 지원수준과 교사회의 빈도는 5점 Likert 양식(1점=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외국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각각의 변수의 문항을 구성한 후, 교수 1인, 경력 10년 이상의 초등교사 3명에게 연구자가 변안한 내용 및 용어가 초등교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사 33명에게 예비조사를 하였다. 이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아동복지 관련 교수 6인, 통계 관련 교수 1인, 경력 10년 이상의 초등교사 3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인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여 최종 78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문항이 선정된 이후 본 조사를 위해 설문지는 42개의 초등학교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배부되었다. 학교마다 배분된 설문지는 교무 부장이나 교감 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통해 해당 교사에게 전달되었고, 설문이 완료된 이후 우편으로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24부 중 312부이었으며,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8부와 경력 1년 미만 교사의 설문지 2부가

제외되어 총 29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아동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행동과 신고 의도의 특성

1) 아동학대 신고 관련 행동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3).

먼저,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73.6%(215명)인데 반해,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26.4%(77명)로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Table 2). 교사의 아동학대 유형별 의심 경험에서는 방임이 64.7%(189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 학대 49.0%(143명), 신체 학대 40.8%(119명), 성 학대 12.0% (35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행동은 아동학대를 의심하였으나 신고를 한 교사들은 16.3%(35명)인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들은 83.7%(180명)로 신

고하지 않은 교사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신고한 집단 중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교사가 직접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85.7%(30명)이었고, 간접적으로 학교 내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된 경우가 14.3%(5명)로 나타났다. 신고가 이루어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의 경우, 신체 학대가 62.9%(22명)로 가장 높았고, 방임 54.3%(19명), 정서 학대 31.5%(11명), 성 학대 31.4%(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다중응답 문항으로 살펴본 결과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가 28.1%(15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 22.1%(118명), “신고가 오히려 아동이나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12.4%(6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신고 의도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의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의도의 평균은 37.27점($SD = 8.52$)으로 나타났다(Table 4). 먼저,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신고 의도를 살펴보았을 때,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의도 점수는 19.30점($SD = 4.38$),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의도 점수는 17.87점($SD = 4.61$)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 신고 의도 점수가 경미한 아동학대 신고 의도 점수보다 높았다($t = 7.38, p < .001$).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로 살펴본 신고 의도의 경우, 교사들은 성 학대에 대한 신고 의도가 10.30점($SD = 2.6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 학대, 방임, 정서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전체에서 신고 의도가 가장 높았던

<Table 2> Suspicions and reporting behavior of child abuse

Variables	Yes	No	Total
Suspicious of child abuse	215(73.6)	77(26.4)	292(100.0)
Suspicious of physical abuse	119(40.8)	173(59.3)	
Suspicious of emotional abuse	143(49.0)	149(51.0)	
Suspicious of sexual abuse	35(12.0)	257(88.0)	
Suspicious of neglect	189(64.7)	103(35.3)	
Reporting behavior of child abuse	35(16.3)	180(83.7)	215(100.0)
Direct/Indirect reporting behavior	Direct 30(85.7)	Indirect 5(14.3)	35(100.0)
Reporting behavior of physical abuse	22(62.9)	13(37.1)	
Reporting behavior of emotional abuse	11(31.5)	24(68.6)	
Reporting behavior of sexual abuse	11(31.4)	24(68.6)	
Reporting behavior of neglect	19(54.3)	16(45.7)	

<Table 3> Reasons not report suspected child abuse (*N* = 242)

	빈도(%)
1. No serious injury visible	150(28.1)
2. Did not have enough evidence	118(22.1)
3. Making a report brings about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family and child	66(12.4)
4. Fear of misinterpreting parent discipline styles	63(11.8)
5. Making a report does not offer help to maltreated children	35(6.6)
6. Did not want to get caught in legal proceedings	29(5.4)
7. Fear of blame/reprisal	25(4.7)
8. Did not know how to make a report	15(2.8)
9. The other school staff members did not want to	14(2.6)
10. It was not part of my job	4(0.8)
11. Other reason	14(2.6)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Less serious case		Serious case		Total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Physical abuse	292	4.29(1.64)	291	5.81(1.38)	291	10.11(2.51)
Emotional abuse	292	3.59(1.42)	289	3.56(1.40)	289	7.15(2.52)
Sexual abuse	292	4.66(1.60)	290	5.62(1.52)	290	10.30(2.66)
Neglect	291	5.32(1.61)	291	4.24(1.74)	290	9.57(2.90)
Total	291	17.87(4.61)	285	19.30(4.38)	284	37.27(8.52)

문항은 심각한 신체 학대 사례로 5.81점($SD = 1.38$)이었고, 심각한 정서 학대 신고 의도가 3.56점($SD = 1.40$)으로 가장 낮았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변수 간 관계의 강도와 회귀 분석 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투입 변수 간에 대부분 $r = 0.7$ 이하의 상관을 보여주었으나, 연령이 교사 경력과 $r = .89$ 로 다중공선성으로 회귀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80기준 이상의 높은 관계를 보이므로 연령은 투입변수에서 제외시켰다(Table 5).

먼저, 주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아동학대 관련 지식은 아동학대 사례 지식($r = .13, p < .05$), 태도($r = .26, p < .01$), 주관적 규범($r = .22, p < .01$)과, 아동학대 사례 지식은 태도($r = .24, p < .01$), 주관적 규범($r = .20, p < .01$), 자기효능감($r = .42, p < .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태도 역시 주관적 규범($r = .36, p < .01$), 자기효능감($r = .41, p < .01$)과, 주관적 규범은 자기효능감($r = .38, p < .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와 주요 독립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원인력 지원수준은 아동학대 관련 지식($r = .21, p < .01$), 아동학대 사례 지식($r = .24, p < .01$), 태도($r = .28, p < .01$), 주관적 규범($r = .32, p < .01$), 자기효능감($r = .31, p < .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교사의 빈도도 아동학대 관련 지식($r = .14, p < .05$), 아동학대 사례 지식($r = .15, p < .05$), 태도($r = .15, p < .05$), 주관적 규범($r = .25, p < .01$),

<Table 5> Pearson's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15**	1									
3	.02	.14*	1								
4	-.05	-.05	.33**	1							
5	.07	.05	.21**	.14*	1						
6	-.05	.09	.24**	.15**	.13*	1					
7	.00	.04	.28**	.15*	.26**	.22**	1				
8	.03	-.00	.32**	.25**	.24**	.20**	.36**	1			
9	-.03	.05	.31**	.18**	.31**	.42**	.41**	.38**	1		
10	-.03	-.05	.26**	.16**	.23**	.55**	.38**	.42**	.54**	1	
11	.14*	.17**	.24**	.05	.12*	.11	.14*	.07	.24**	.19**	1

Note. 1. Education, 2. Teaching experience, 3. Support level of specialist, 4. Discussion on child abuse, 5. Child abuse related knowledge, 6. Knowledge of child abuse cases, 7. Attitude on reporting, 8. Subjective norm, 9. Self-efficacy on reporting, 10. Reporting intention, 11. Reporting behaviour.

* $p < .05$. ** $p < .01$.

자기효능감($r = .18, p < .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신고 의도와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지원인력 지원수준($r = .26, p < .01$), 교사회의 빈도($r = .16, p < .01$), 아동학대 관련 지식($r = .23, p < .01$), 아동학대 사례 지식($r = .55, p < .01$), 태도($r = .38, p < .01$), 주관적 규범($r = .42, p < .01$), 자기효능감($r = .54, p < .01$), 신고 행동($r = .19, p < .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신고 행동과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고 행동은 최종학력($r = .14, p < .05$), 교사경력($r = .17, p < .01$), 지원인력 지원수준($r = .24, p < .01$), 아동학대 관련 지식($r = .12, p < .05$), 태도($r = .14, p < .05$), 자기효능감($r = .24, p < .01$), 신고 의도($r = .19, p < .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계수를 산출하였는데, VIF 계수는 1.107-1.842로 모두 2 이하로, 공차한계는 .543-.903으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DW = 1.858$ 로 그 값이 2에 가까우므로 자기 상관에 의한 회귀모델의 이상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어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 학교 특성을 통제변수로 한 아동학대 신고 의도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F = 19.240, p < .001$), 전체적으로 47.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례 지식($\beta = .381, p < .001$), 태도($\beta = .103, p < .05$), 주관적 규범($\beta = .191, p < .001$), 자기효능감($\beta = .260, p < .001$)은 모두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1단위 증가하면 신고 의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 학교 특성 변수들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를 신고와 비신고로 하고 독립변수는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신고 의도를,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 학교 특성 변수를 포함한 모델의 적합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53.330, p < .001$). 또한, 분류표를 통해 살펴본 모형의 적합도도 역시 전반적인 분류의 예측도가 89.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근거로 독립변수가 신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Wald = 5.703,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7). 이는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 점수가 증가하면 신고 행동을 할 가능성이 1.160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marginally significant)’에서 교사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d = 3.533, $p < .10$).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1단위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f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Reporting intention			
		<i>B</i>	<i>S.E.</i>	β	<i>t</i>
Independent variables	Child abuse related knowledge	.171	.257	.032	.666
	Knowledge of child abuse cases	.636	.081	.381	7.847***
	Attitude on reporting	.146	.071	.103	2.062*
	Subjective norm on reporting	.240	.063	.191	3.820***
	Self-efficay on reporting	.481	.101	.260	4.753***
Control variables	Gender(female=1)	-2.161	1.159	-.088	-1.865
	Parental status(Yes=1)	-1.268	1.047	-.061	-1.210
	Education(master degree or higher=1)	-.105	.880	-.005	-.120
	Teaching experience	-.049	.051	-.049	-.949
	Child abuse training(Yes=1)	-.617	.845	-.034	-.730
	Reporting procedure(No=1)	.231	1.120	.012	.206
	Reporting procedure(Not sure=1)	1.747	1.028	.098	1.700
	Support level of specialist	.078	.407	.010	.192
	Discussion on child abuse	.097	.452	.010	.214
Constant		-14.936	4.413		-3.463
		<i>Adj-R² = .474</i>		<i>F = 19.240(p =.000***)</i>	

****p* < .001. **p* < .05.

<Table 7> Factors influencing of child abuse reporting behaviour

		<i>B</i>	<i>SE</i>	Wald	Exp(<i>B</i>)
Independent variables	Child abuse related knowledge	.039	.153	.067	1.040
	Knowledge of child abuse cases	-.079	.056	2.016	.924
	Attitude on reporting	.008	.038	.047	1.008
	Subjective norm on reporting	-.029	.036	.683	.971
	Self-efficay on reporting	.148	.062	5.703*	1.160
	Reporting intention	.072	.038	3.533 ⁺	1.075
Control variables	Gender(female=1)	1.692	.774	4.785*	5.432
	Parental status(Yes=1)	1.143	.755	2.295	3.137
	Education(master degree/higher=1)	.909	.449	4.086*	2.481
	Teaching experience	.037	.028	1.848	1.038
	Child abuse training(Yes=1)	.463	.451	1.055	1.589
	Reporting procedure(no=1)	.788	.575	1.882	2.200
	Reporting procedure(Not sure=1)	-.478	.569	.705	.620
	Support level of specialist	.630	.233	7.279**	1.877
Discussion on child abuse	-.278	.252	1.212	.757	
Constant		-9.512	2.845	11.181**	.000
Model χ^2		$\chi^2 = 53.330(p = .000)$		df = 15	
Nagelkerke R ²		R ² =.330			

⁺*p* < .10. **p* < .05. ***p* < .01.

증가하면 신고 행동을 할 가능성이 1.075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 학교 특성 변수들이 신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사의 성별(Wald = 4.785, $p < .05$), 최종학력(Wald = 4.086, $p < .05$), 지원인력의 지원수준(Wald = 7.279,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신고 행동에 대한 가능성이 남성의 신고 행동에 대한 가능성보다 5.432배 높고, 대학원 졸업을 한 집단의 신고 행동에 대한 가능성이 4년제 대졸 이하 집단의 신고 행동에 대한 가능성보다 2.481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원인력의 지원수준이 1단위 증가하면 신고 행동을 할 가능성이 1.827배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유무, 교사 경력,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 신고 절차 인식 여부, 아동학대 관련 교사회의 빈도는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행동이론을 근거로 하여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292명 중 73.6%가 아동학대 사례를 의심한 경험이 있었으나 의심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는 16.3%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고율은 호주 퀸즐랜드 공립초등학교 29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Goebbels *et al.*(2008)이 조사한 79.5%의 신고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신고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신고의무제의 오랜 역사를 가진 호주의 교사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감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을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는 일로 간주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교사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나온 응답은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이었다. 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여부나 아동학대에 대한 확신 부족이 신고의 주요 방해 요인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ostello, 2009; Feng, 2003; Feng *et al.*, 2010; Greytak, 2009; Huh, 2003; Kenny, 2001).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만을 신고해야 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의도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의도가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의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학대 하위 유형별 신고 의도에서는 정서 학대, 방임의 신고 의도가 신체 학대, 성학대의 신고 의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와 유사한 연구를 시행한 한국의 Kim and Park(2005), 대만의 Feng(2003), 미국의 Greytak(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대

부분의 교사는 심각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신고를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물리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정서 학대나 방임의 경우,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은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MHW and NCP(2012)가 보고한 바와 같이 방임과 정서 학대가 가장 많이 신고 되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해 볼 때, 초등학교 교사가 방임과 정서 학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아동학대 사례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행동이론을 근거로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대만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Feng(2003)의 연구결과와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가 대만 유치원 교사의 신고 의도의 예측요인이라고 한 Feng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인식,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이 대만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의 예측요인이라고 한 Lee(200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통합행동모델을 근거로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미국 교사의 신고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Greytak(2009)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볼 때, 계획행동이론의 주요 변수들은 우리나라와 대만의 간호사와 교사의 신고 의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경우, 체벌 훈육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중시하는 전통적 유교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는 자기효능감과 아동학대 신고 의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긴 하지만 신고 의도가 신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신고 의도는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으므로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과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 대신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는데 자기효능감도 역시 계획행동이론과 동일하게 직접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행동 변화에 중요한 변수라는 Bandura(1997)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교사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미국의 Greytak(200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Greytak(2009)가 근거로 한 통합행동이론을 살펴보면, 이 이론은 Ajze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외부요인,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통합행동이론을 Greytak(2009)는 지식 요인이나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수정된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은 본 연구에서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수정한 모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와는 달리 Greytak(2009)는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분석 방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보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총 표본수가 166 명으로서 추정되는 모수 개수의 5~10배를 필

요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신고 행동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추후에 본 연구 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교사들이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를 위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교사의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은 신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하는데 자기효능감은 지속적인 특질이 아니므로 교육과 훈련으로 조절이 가능하다(Bandura, 1977). 그러므로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교사교육보다 보다 심화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할극(role play)이나 사례 중심접근(case-based approach) 방식을 통해 아동학대의 인식과 신고에 대한 많은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사례로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보도 교사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동료 교사, 교무 부장, 교감, 교장 등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 결과,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은 교사들의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므로 학교 교직원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최근 신설된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 규정 등의 관련법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이나 신고에 관한 지침서를 배분하여 신고에 대한 지지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 평가를 통해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연대 책임을 물어 학교장이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하고, 기관장 간담회나 연수 등이 있을 때 학교장에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아동학대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초등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비록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긴 하지만 교사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아동학대 사례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교사의 신고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교사들의 신고 의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초등 교사 연수 관련 기관에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사 교육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기 위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개발될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 신고자 보호규정, 신고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 등 구체적인 법적 내용과 신고에 따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해결해 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교로부터 신고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지원을 얻는 방법, 아동학대 유형별로 사례를 사정하고 신고하는 방법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에 자신감을 갖도록 역할극이나 가상의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신고자가 법적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는 특성으로 연구대상자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여 신고율이 높았던 지역이나 교육복지우선지역에서 연구에 동의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을 전국 단위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조사로 한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질적 연구를 한다면 연구의 함의를 보다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있어서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질적 연구를 통해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교사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였는데 실제 교사들이 생각하는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내고, 더 나은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논의와 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후속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보다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아동학대 관련 연

수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H Freeman and Company.
- Carpenter, A. M. (2008). *Examination of clinical and legal issues relevant to child maltreatment repor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vada University, Las Vegas, America.
- Choi, K. I. (2011). Factors influencing teachers' intentions to report a child abus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1), 27-46.
- Chung, W. J. (2009). Influencing factors on the exclusion of intention in reporting of child abuse-focus on day-care center teac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7(12), 133-152.
- Costello, L. H. (2009). *A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child maltreatment and mandatory repor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America.

- Daro, D. (2008). (Ed.).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8th ed.). Chicago :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 Feng, J. Y.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Buffalo, America.
- Feng, J. Y., Huang, T., & Wang, C. (2010).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 with reporting child abuse in Taiwan. *Child Abuse and Neglect*, 34(2), 124-128.
- Feng, J. Y., & Levine, M.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Child Abuse and Neglect*, 29(7), 783-795.
- Fraser, J. A., Mathews, B., Walsh, K., Chen, L., & Dunne, M. (2010).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cognition and reporting by nurses : A multivariat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2), 146-153.
- Goebbels, A. F. G., Nicholson, J. M., Walsh, K., & De Vries, H. (2008). Teachers' reporting of suspected child abuse and neglect : Behaviour and determinants. *Health Education Research*, 23(6), 941-951.
- Greytak, E. A. (2009). *Are teachers prepared? Predictors of teachers' readiness to serve as mandated reporters of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University, Philadelphia, America.
- Hawkins, R., & McCallum, C. (2001). Mandatory notification training for suspected child abuse and neglect in South Australian schools. *Child Abuse and Neglect*, 25(12), 1603-1625.
- Hinson, J., & Fossey, R. (2000). Child abuse : What teachers in the 90's knows, think, and do. *Journal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at Risk*, 5(3), 251-256.
- Huh, N. S. (2003). The factors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3, 209-230.
- Kenny, M. C. (2001). Child abuse reporting : Teachers' perceived deter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5(1), 81-92.
- Kim, J. S., & Park, G. S. (2005). Predictors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1(2), 211-220.
- Kim, K. M. (2012). *Development of an education counseling system and the information ethics index Based on TPB to improve the information ethics behavior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im, S. Y., & Yoon, H. M. (2003). Educare center teacher's attitudes toward child abuse reporting. *Journal of Human Ecology*, 7(1), 121-140.
- Kim, S. J., & Lee, J. Y. (2011). Mandatory reporting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and Rights*. 15(1), 21-43.
- Lee, P. Y. (2008).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mong nurses in Taiwan : Professional knowledge, perceptions, attitudes,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land University, Brisbane, Australia.
- Lee, P. Y., Dunne, M. P., Chou, F. H., & Fraser,

- J. A. (2012).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neglect reporting self-efficacy questionnaire for nurses. *Kaohsiung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8(1), 44-5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2012). *2011 Child Abuse in Korea*. Seoul : Hanbit.
- Natan, M. B., Faour, C., Naamhah, S., Grinberg, K., & Klein-Kremer, A. (2012). Factors affecting medical and nursing staff reporting of child abus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 331-337.
- O'Toole, R., Webster, S. W., O'Toole, A. W., & Lucal, B. (1999). Teachers' recognition and reporting of child abuse : A factorial survey. *Child Abuse and Neglect*, 23(11), 1083-1101.
- Park, J. H. (2007). *The effect on safety behavior of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Focusing on students majoring in dental technici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ovey, R., Conner, M., Sparks, P., James, R., & Shepherd, R. (200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to two dietary behaviours : Roles of perceived contro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 121-139.
- Terry, D. J., & O'Leary, J. E. (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 The effects of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and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199-220.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2010). *Child Maltreatment 2010*. Washington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ldecker, C. E. (2009). *Predicting child abuse reporting practices among school psychologis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John's University, New York, America.
- Walsh, K., Schweitzer, R., & Bridgestock, R. (2005). *Critical factors in teachers' detecting and reporting child abuse and neglect : Implications for practice*. Brisbane :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Wang, C. T., & Holton, J. (2007). *Total estimated cost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United States*. Prevent Child Abuse America Chicago, Illinois. Retrieved February 24, 2011, from <http://www.childwelfare.gov/>
- Webster, S. W., O'Toole, R., O'Toole, A. W., & Lucal, B. (2005). Overreporting and underreporting of child abuse : Teachers'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Child Abuse and Neglect*, 29(11), 1281-1296.

2013년 2월 25일 투고, 2013년 5월 26일 수정
2013년 6월 13일 채택